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안)

의안 번호	239
----------	-----

발의년월일 : '93. 6. 14

발 의 자 : 운영위원장

□ 제안경위

1. 1993. 5. 3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 논의
2. 1993. 6. 14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오 운균의원의 동의와 김경희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 성립

□ 제안이유

1. '91. 7. 9 제정 이후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개정
2.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 명시로 운영 합리화

□ 주요골자

1. 의회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
2. 의원 청가 신청에 따른 허가 절차 개선 (안 제7조)
3. 의안이 2개 위원회 이상 관련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 명기 (안 제21조)
4. 의안 및 예산안 제출권자에 교육감을 삽입

□ 예산사항 : 없음

충청북도의회의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처"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7조(제7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

제21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한다.

제28조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한다.

제51조제1항중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도지사로 부터"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부터"로 한다.

제73조제4항 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한다.

제74조제1항중 "도지사에게"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로 하며, 제2항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으로 한다.

제94조 (시행규정)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등록) 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 증서를 <u>의회사무국</u>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조 (의석배정) ① (생략) ②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은 <u>사무국장</u>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p> <p>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생략)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u>(신 설)</u></p> <p>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생략) <u>(신 설)</u></p>	<p>제2조 (등록) <u>의회사무처</u>.....</p> <p>제3조 (의석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u>사무처장</u>.....</p> <p>제7조 (청가 및 결석)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만,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u></p> <p>제21조 (상임위원회 회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p> <p>①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위원 및 <u>사무국장</u>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날인한다.</p> <p>② (생략)</p>	<p>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p> <p>①<u>사무처장</u>이.....</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8조(위원회의 심사)</p> <p>① (생략)</p> <p>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u>도지사의</u>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58조(위원회의 심사)</p> <p>① (현행과 같음)</p> <p>②<u>도지사 또는 교육감</u>의.....</p> <p>③ (현행과 같음)</p>
<p>제68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u>도지사</u>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68조(예산안 심의) ①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부터.....</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요구)</p> <p>① ~ ③ (생략)</p>	<p>제73조 (도지사 등의 출석 요구)</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u>도지사에게</u>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p> <p>제74조 (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p> <p>①의원이 <u>도지사에게</u>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u>도지사에게</u> 송부하여야 한다.</p> <p>②<u>도지사는</u>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신 설)</p>	<p>④ <u>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u></p> <p>제74조 (도지사에 대한 서면질문)</p> <p>① <u>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u>..... <u>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u>.....</p> <p>② <u>도지사 또는 교육감은</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4조 (시행규정)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u></p>